

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고, 공개되는 범죄사실은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
#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시청

전문공보담당자 형사2부장 곽금희  
전화 055-760-4302 / 팩스 055-760-4454

## 보도자료

2024. 2. 13.(화)

### 제목

## 1억 원을 받고 자치단체장 등을 공직선거법위반으로 허위 진정한 무고사범 직접구속 기소

#### 공소제기 후 공개의 요건 및 범위

- 피고인, 죄명, 공소사실 요지, 공소제기 일시, 공소제기 방식, 수사경위, 수사상황, 범행경과 및 수사의 의의 등 (제11조 제1항)
- 제9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미리 공개가 필요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소속 검찰청의 장의 승인이 있는 경우(제11조 제2항 제2호) 제7조 제2호 내지 제6호의 공개금지정보

- **창원지검 진주시청 형사1부(부장검사 허성규)**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상대 후보 지지자로부터 현금 1억 원을 받고 **OO군수 당선자와 OO군 이장 등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였다**고 허위 진정서를 제출한 후 조작한 녹음파일 등 위조한 증거까지 제출한 피고인 A를 무고, 변호사법 위반, 모해증거위조 및 모해위조증거사용 혐의로 오늘(2. 13) 직접구속 기소 하였습니다.
- 검찰에서 직접 수사한 결과, 피고인 A는 카드빚 등 개인채무가 과다하고 생활비가 부족하자, 지방선거의 후보자간 경쟁상황을 악용해 돈을 벌기로 마음먹고, 진정의 대가로 상대방 후보 지지자로부터 현금 1억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**OO군수 당선자의 당선무효를 위하여 무고한 사실**을 밝혀냈습니다.
- 앞으로도 검찰은 국가의 심판기능을 저해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한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, 현금 1억 원을 건넨 관련자 등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를 진행하여 범행 전모를 규명하겠습니다.

# 1

## 사건관계인

- 피고인 : A(남, 44세, 회사원, 구속)
- 피해자 : B(OO군수), C(OO군 이장)
- ※ 관련자 D(OO군수선거 경선탈락), E·F(D 지지자), G(D 배우자), H(D 사촌)

# 2

## 공소사실 요지

- E로부터 현금 1억 원을 대가로 받고 '22.7.5. 경남선관위에 'B·C 등이 공직 선거법을 위반하였다'는 허위 진정서를 제출하여 [무고 및 변호사법위반],
  - ※ B(OO군수)가 유권자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당선촉하연 명목으로 향응을 제공했다거나, C(이장)가 주민들의 휴대전화 수십 대를 빌려 B를 위해 경선에서 여론조작을 하였다는 등 근거 없는 거짓 내용으로 진정
- '22.6.28. C가 경선여론조사를 조작한 사실이 있던 것처럼 성명불상자와 대화하면서 녹음하는 방법으로 증거를 위조한 후, 7.13. 선관위 직원에게 위조된 녹음파일을 제출하여 [모해증거위조 및 모해위조증거사용]

# 3

## 수사 경과

- '23. 1. 18.       진주지청, 고소장 접수 및 수사과 지휘
- '23. 1.~3.       수사과, 피해자 및 피의자 조사
- '23. 3. 22.       수사과 사건 송치
- '23. 4.~12.      범행동기·경위·공모관계 등 확인
- ※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검찰이 직접 수사

### <주요 수사 내용>

- △ 포괄계좌추적 및 통화내역 분석 → 대화 녹음파일에서 언급된 현금 교부 일시와 피고인 A, E의 기지국위치가 일치하고, 현금 교부 이후 고액의 현금의 피고인 A의 계좌에 입금되는 등 실제 현금 1억원 교부 사실 확인
- △ 피고인 A 조사(5회) 및 B 조사(3회) 등 관련자 13명 총 25회 조사
  - 피고인 A가 금전을 목적으로 허위 진정에 이른 범행 경위 확인
- △ 피고인 A, D~H의 주거지 등 압수수색,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통해 400여개의 대화 녹음파일, 약 10GB 상당의 대화내역 등 전자정보 분석
  - 피고인 A의 통화내역, 대화내용 등을 면밀하게 분석한 결과, 자신의 지인과 C의 여론조작에 대한 대화를 허위로 조작한 사실을 적발하여 모해증거 위조 및 모해증거위조사용 인지
- △ 진정서를 제출한 행위에 대하여 판례 수집·분석 및 법리 검토 → 피고인 A의 변호사법위반 인지

○ '24. 1. 26. A 구속영장 발부

○ '24. 2. 13. A 구속 기소

※ 공소사실에 대하여 사실관계 모두 자백

○ 관련자 D~H의 공모 여부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 진행하여 신속하게 규명

## 4 수사의 의의 및 향후 계획

- 이 사건은 1억 원이라는 고액의 금품을 받고 지방선거 결과를 번복하려 했던 범죄로, 선거에 관한 무고 행위는 국가의 심판 기능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.
- 검찰은 치밀한 수사를 통하여 피고인 A가 녹음파일을 위조하고 증거로 제출한 무고 범행의 진상을 밝혀내고 직접 구속하여 엄벌하였습니다.
- 검찰은 피고인 A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, 현금 1억 원을 건넨 관련자들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를 진행하여 범행 전모를 규명하겠습니다. ☑